

# 환경오염 현황과 정책방향

鄭 國 鉉

〈환경청 환경정책국장〉

이 자료는 지난 10월 24일 상공회의소 주최 환경오염방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 I. 환경문제의 대두

### 1. 세계적 추세

- 최근 오존층 파괴, 산성비, 온실효과, 유해물질의 국제수송 등으로 인한 地球環境危機에 대한 세계적 관심집중
  - Time紙는 “위기에 처한 지구”를 “올해의 위성”으로 선정 특집발행(1월2일)
  - 세계정상들의 관심집중
    - G-7회담 : 環境問題를 주요의제로 채택('89. 7)
    - 부시 美대통령 : '90년에 환경정상회담제안('88. 12)
    - 코르바초프 소련서기장 : 군비축소와 함께 환경보전위기에 대한 대책을 강화('88. 12)
    - 대처 英國수상 :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중단 제의(89.3)
  - 현재 개최중인 제44차 UN총회에서 이슈로 등장

### 2. 국내여건

- 최근 上水源 및 淨水場 오염보도로 인한 쾌적한 환

경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

-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한 대통령담화문 발표(6.5)
- 맑은 물공급 종합대책수립 및 시행(9.1)
- 환경행정조직정비, 지도단속강화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 활성화
  - 중앙환경행정기관의 승격추진 및 지방행정조직 확대
  - 환경오염행위를 민생침해 차원에서 규제
- 한편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행동 및 반공해운동 점증
  - 지역주민들의 공장설치 반대 또는 이주요구
  - 일반 반공해운동의 정부·기업 일방적 매도

## II. 분야별 환경오염현황 및 대책

〈大氣분야〉

### 1. 현 황

대도시의 인구 및 경제활동의 가속적 증가로 인하여 대기오염 심화

- 아황산가스 오염 : 난방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겨울철에 심화
- 분진 : 연중 높은 수준(겨울철에 더 높음)
  - 전국 주요지역 아황산가스 및 분진 등의 오염도(1988)

오염물질	환경기준 (연평균)	도 시			
		서 울	釜 山	大 邱	光 州
SO <sub>2</sub> (ppm)	0.05	0.062	0.044	0.052	0.019
분 진 ( $\mu\text{g}/\text{m}^3$ )	150	179	214	155	100

## 2. 대기오염요인

### 가. 아황산가스 오염도 상승

- 고유황연료(연탄, B-C油)를 난방연료로 사용  
- 전기, 가스 사용비율 18%에 불과

### 나. 차량급증

- 전국자동차 대수 증가  
- 89년 6월현재 80년 528천대에서 4배 증가된 2,296천대
- 경유차 비율이 높음.  
- 韓國 45%, 美國 3%, 日本 13%, 유럽 20%

### 다. 분진대책 미흡

-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방지대책 미흡  
- 도로상 비산분진  
- 자동차 매연  
- 난방연료 사용  
- 산업공정  
- 황사현상  
- 도시내 비산분진 배출업소 산재(연탄공장, 레미콘 공장등)

## 3. 대책방향

### 〈기 본 방 향〉

- 아황산가스와 분진의 환경기준 달성 및 획기적인 개선 필요  
- 1992년까지  
· SO<sub>2</sub>: 연평균 0.05PPm 달성  
· 분진: 연평균 150 $\mu\text{g}/\text{m}^3$  달성  
- 2000년까지  
· SO<sub>2</sub>: 연평균 0.03PPm 달성(환경기준 강화)  
· 분진: 연평균 75 $\mu\text{g}/\text{m}^3$  달성(환경기준 강화)

### 가. 연료규제 대책(SO<sub>2</sub> 저감 대책)

#### (1) 현재까지의 주요대책

- 저유황유 사용의무화(1981.7.1 이후 계속)  
- 대상지역: 전국 19개시 9개군(수도권, 釜山, 大邱, 光州, 大田, 蔚山지역)  
- 내 용  
· 유황함량 4% 벙커-C油에서 1.6% 벙커C-油 사용 의무화('81)  
· 유황함량 1% 경유에서 0.4% 경유 사용 의무화('81)  
※ '88년도 사용량  
- B-C油: 4,993만 배럴(총량의 64.9%)  
- 경 유: 5,923만 배럴(총량의 79.6%)
- 서울시 대형빌딩 LNG 사용 의무화('88.9.1 이후)  
- 서울시내 2톤이상 보일러를 가진 빌딩 1,100여개소에 대하여 LNG 사용 의무화  
\* 1987.3.부터 수도권 지역에 LNG 공급시작

#### (2) 향후대책

### 〈현재 현황〉

- 연탄사용 주택의 난방연료를 연탄에서 경유 및 LNG 등으로 급속히 전환중.  
· 전 국: '86: 5.8%, '87: -1.8%, '88: -2.8%, '89(추정): -11.9%  
· 서 울: '86: 3.7%, '87: -4.4%, '88: -6.0%, '89(추정): -15.0%  
\* 연탄에서 경유로 전환시 SO<sub>2</sub> 배출량 73.6% 감소(1/4 감소)

- 수도권지역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확대  
- 대상연료: 현재의 LNG외에 유황함량 0.4%이하 유류포함  
- 대상지역: 현재의 서울시 외에 수도권 14개 시·군으로 추가  
- 대상시설: 현재의 대형빌딩(보일러용량 2톤이상) 외에 중산층 아파트, 신설아파트, 중·소형빌딩(보일러용량 0.5~2톤), 발전소 추가(당인리, 인천)
- 초저유황유 공급 추진  
- 내 용

유황함량 1.0% 벵커-C油와 0.2% 경유 공급  
- 생산시설 확대 계획

(단위: 천B/D)

	計	89. 11	1992	1993	비 고
중질유 분해시설 (0.2% 경유생산)	104	34	40	30	자동차에 우선 공급
중질유 분해시설 (1.0% 벵커-C油 생산)	80	-	50	30	서울 및 지방대 도시 우선 공급

• 지방 대도시 LNG 공급계획(한국가스공사 주관)

(단위: 천톤 / 년)

	1989	1993	1997	2001	2006	
LNG 도입량	2,000	3,000	4,500	6,500	9,000	
공급 계획	도시가스용 (수도권)	361 (361)	859 (789)	2,973 (1,053)	2,976 (1,619)	4,528 (2,193)
	발전용	1,639	2,141	2,957	3,524	4,472
	공급지역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중 소 도 시	중 소 도 시

註: 수도권지역의 신도시(분당, 일산, 안양시 평촌지구)에는 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

### 나. 자동차 공해 대책

(1) 현재까지의 주요대책

- 저공해 승용차 보급
  - 기준 강화내역('87.7.1)
    - NOx : 2.5 g/km → 0.62 g/km (75% 저감)
    - CO : 18 g/km → 2.11 g/km (88% 저감)
    - HC : 2.8 g/km → 0.25 g/km (91% 저감)
  - '89.6 현재 저공해 승용차 보급률 48% (60만대)
  - 납공해 사전 방지(저공해차 확대 보급으로 無鉛휘발유 사용 촉진)
- 자동차 매연단속
- 8만km 배출가스 성능 보증제도 채택('90.1.1 이후)
- 경유차 매연감소대책 추진
  - 소형버스(15인승 이하) LPG 사용허용('90.1)
  - 시내버스 연료인 경유에 LPG 30% 혼합사용 추진(성능시험중) (매연 약 65% 감소 효과)

(2) 향후대책

- 시내버스에 LPG 혼소(30%)장치 부착 추진
- 경유자동차 기준강화 추진
  - 제작차 및 운행차
- 경유차(버스, 트럭)출력 강화 추진(180→230마력)
- 매연단속반(기존 41개반) 증설

### 다. 粉塵대책

(1) 현재까지의 주요대책 추진실적

- 도로청소의 강화
  - 현재 서울시 도로청소 인력 2,978명, 차량 34대
- 도시내 비산분진 배출업소 관리 강화
- 공사장 분진 관리대책 추진

(2) 향후 주요대책

- 도로분진 저감을 위한 진공청소차 사용 확대
- 도시업종 특별관리
  - 연탄, 레미콘 등 분진 배출업소 완전 밀폐화 및 방지시설 개선 조치)
- 공사장 관리 강화
- 노천소각 금지

### 라.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1) 현재까지의 대책

-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온라인화 49개소

(1989 현재)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SO <sub>2</sub> , NO <sub>x</sub> , CO, O <sub>3</sub> , TSP)	산성비 측정기
전 국	49	45
서 울	10	10

(2) 향후대책

-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
  - 현재 49개소를 '96까지 92개소로 확충
- 대기오염 정보체제 운영
  - 온라인화된 전국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활용
  - 1993년부터 실시 예정

### <水質분야>

#### 1. 현 황

가. 4大江 분류와 주요 상수원인 호소수질은 비

표적 양호

(1989. 1~8 평균 : ppm)

한 강	의암	충주	팔당	노량진	〈용수별 기준〉 ○상수원수 1 ppm : 간이정화 2 ppm : 일반정화 6 ppm : 고도정화 ○농업용수 : 8 ppm ○공업용수 : 10ppm
	1.2	1.3	1.4	3.9	
낙동강	안동	달성	남지	을금	
	0.7	1.8	4.8	3.9	
금 강	옥천	대청	청원	부여	
	1.4	1.5	2.5	3.5	
영산강	담양	광주	함평	무안	
	2.0	4.3	4.6	1.3	

나. 대부분의 연안은 수산물양식 및 해양위락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

(1989. 1~6 평균 : ppm)

仁川	忠武	釜山	蔚山	麗水	〈용도별 기준〉 ○수산물양식 : 1ppm ○해양위락 : 2ppm ○공업용수 : 4ppm
2.1	1.4	1.7	1.8	2.2	

2. 주요시책 추진방향

-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강화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
- 오염하천 집중 정화사업 추진
-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
-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확립

3. 추진대책

가. 良質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강화

- 상수취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강화
  - 전국 수계별 수질측정망의 확충
    - 용수이용목적별 수질감시체계 확립
  - 수질측정 정도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실시
    - 수질측정분석요원에 대한 교육
    - 표준시료에 의한 정도관리실시  
(환경지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소, 자가측정대행자 대상)

수 계	計	하천 수	호수 수	상수 원수	농업 용수	공단 배수
총 계	665	337	96	149	45	38
한 강	170	102	30	30	5	3
낙 동 강	138	72	15	32	10	9
금 강	84	52	7	16	6	3
영 산 강	45	19	11	5	7	3
섬 진 강	24	9	9	6	-	-
기 타 수 계	204	83	24	60	17	20

• 주요상수원에 대한 특별관리

- 팔당·대청호 영향권을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 예정
  - 팔당 : 경기도 7개군 42읍면(2,101km<sup>2</sup>)
  - 대청 : 충청북도 및 대전시 3군 1구 12읍면(735 km<sup>2</sup>)
- 특별대책지역내 오염행위 강력규제
  - 대형 유해배출업소 입지제한 및 타지역으로의 이전촉진
  - 가두리양식장 등 직접오염원의 입지역제
  - 호텔, 관광음식점, 휴양시설의 입지제한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방지시설 설치대상 확대
  - 국토이용계획확상의 용도지역 변경억제
- 수질종합관리체계의 확립
  - 팔당수질 관리사무소의 설치로 오염행위 현장 단속강화
  - 호소수질연구소의 설치운영으로 현지적용 가능한 오염방지기술 개발
-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 상수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하류 지방자치단체의 원수 사용대금의 일정률을 징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및 편익시설의 지원
- 축산시설의 집단화된 지역에 축산폐수 공동정화시설 설치

(단위 : 억원)

	지 역	사 업 비
계	38	50
팔 당	28	43
대 청	10	7

- 면단위이하 인구밀집지역의 생활오수 및 축산분뇨

의 적정처리를 위한 간이오수처리장 건설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지 역	사 업 비
계	24	14
팔 당	16	13
대 청	8	1

사 업 실 시 중		1990 신 규 사 업	
(9 개 하 천)		(5 개 하 천)	
안 양 천	195	장 흥 탐 진 강	4
광 주 천	38	오 산 천	7
금 호 강	358	목 포 죽 교 천	36
춘 천 공 지 천	29	대 천 천	16
용 인 경 안 천	24	원 주 천	38
전 주 천	39		
중 량 천	74		
순 천 동 천	18		
이 리 유 천	23		

나.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

- 하수처리시설의 조기건설
  - 1단계 : 팔당호, 대청호 등 상수원 상류지역의 12개소를 '92년까지 조기완공(1,251억원)
  - 2단계 : 하수처리시설이 곤요한 일반도시지역의 72개소를 '92년까지 설치(20,115억원)

1988	1992	1996	2001
25	36	65	75

- 日本 : 37%, 美國 : 65%, 西獨 : 92%
-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 대구남천, 진주, 청주, 이리, 여천, 논공공단(279억원)
  - 진주, 청주, 이리, 여천공단은 증설추진('89~'91, 139억원)
- 農工地區 공동 오폐수처리장 건설
  - '90년까지 47개소 설치

(단위 : 억원)

	計	88~89	1990	비고
○시 설 수	47	28	19	—
○사 업 비	172	109	63	—
—국 고	120	76	44	70%
—사 업 자	52	33	19	30%

다. 오염하천 집중 정화사업 추진

- 도시관류 및 공단 직하류하천에 대한 하상퇴적오니 준설, 정비로 하천의 자정능력 확대
- 안양천 등 9개하천 사업실시중
- '90년에 5개하천 사업확대

라.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

- 방지시설 非正常가동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문제(대형, 민원유발 등)업소 : 환경지청
  - 소형 배출업소, 축산시설 : 시·도
- 배출허용기준 및 처벌기준의 강화
  - 농도규제방식→배출시설 규모별 차등규제→총량규제의 실시
  - 의무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
    - 고의적 비정상 가동업체 적발시 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 배출부과금 부과율의 인상추진
  - 고의적 비정상 가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기준의 엄격화
    - 3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5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기반조성
  - 배출업소의 환경관리전담부서 설치 지도 및 권장
    - 1~3종(폐수 1일 500m<sup>3</sup> 이상 배출)업소
  -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 1~4종(폐수 1일 50m<sup>3</sup> 이상 배출)업소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방지시설의 長期低利融資
    - 환경오염방지기금(연 7%,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183억원
    - 국민투자기금(연 11%,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50억원
  - 도금·인쇄 등 소규모(5톤이하) 악성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폐수 위·수탁처리제도 도입

마. 해양오염방지대책 추진

- 해수수질측정망 확충
  - 측정해역 : 연안에서 근해까지 확대
  - 측정지점 : 199개소에서 306개소를 확충
- 해상공원 및 취약해역 특별관리
  - 적조해역 항공예찰 실시(해양경찰대)
  - 해수수질, 해양오염원, 선박오염발생 등 해양환경 조사실시

- 마산만 준설사업 추진
  - 사업기간 : '88~'91년
  - 사업물량 : 100만 5천 m<sup>3</sup> 준설
  - 사업비 : 124억원
  - 기존방파제의 개축을 통한 해수순환장애 제거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수산물 공동활복장 및 폐수처리장 설치
  - 수산폐기물 해양배출 유도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체계 확립

- 유해화학물질 관리기능 제고
  -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품목 확대
    - 살충제, 실시제, 방부제, 잠재성 유해물질
- 화학물질의 안전성 실험연구 활성화
  - 환경연구원 주도하여 안정성연구원, 화학연구소, 농약연구소 등과 연계추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추진
  - 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합성화학물질과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극물의 통합관리
  - 유해물의 성질에 급성독성, 유전독성, 환경독성까지 포함하고 유해성 정도에 따라 차등관리
  - 안정성 심사평가 기구의 상설화
- 국제정보 체제확립 및 자료의 축적
  - 국제 유해화학물질 등록기구(IRPTC), 美國 환경청 등과 협력강화
  - 유통화학물질 목록작성
- 유해성 독극물 취급제한 확대지정
  - 국내판매 및 사용금지 등
- 독극물업소 안전관리 지도감독 강화

• 발생량

(단위 : 천톤 / 일)

1984	1985	1986	1987	1988
54	58	61	67	73

• 성 상(1988)

(단위 : 톤 / 일)

합	연탄재	음 식물	종 이	목 재	금 속	기 타
72,897 (100%)	28,994 (39.8)	17,055 (23.4)	7,756 (10.6)	2,476 (3.4)	3,067 (4.2)	13,549 (18.6)

• 처리내역(1988)

매 립	소 각	재 활용	기 타
(95%)	(1.7%)	(2.4%)	(0.9%)

나. 분 노

• 발생량

(단위 : 천kl / 일)

1984	1985	1986	1987	1988
29	30	31	32	33

• 처리시설 현황(1988)

	시 설 수 (개소)	시 설 규모 (kl / 일)	투 자 비 (백만원)
합	149	12,677	129,268
도 시	65	10,918	89,348
읍 · 면	84	1,759	39,920

• 처리내역(1988)

(단위 : %)

수세화 처 리	분 노 처리장	부 속 탱 크	해 양 투 기	퇴비화	기 타 (자연감량)
(45.0)	(30.3)	(12.0)	(0.3)	(4.2)	(8.2)

<폐기물분야>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가. 쓰레기

다. 산업폐기물

• 발생량

(단위 : 천톤 / 일)

1984	1985	1986	1987	1988
31	33	37	42	51

• 처리형태

	배출 업소수	총배출량 (톤/일)	처 리 형 태			
			자 처 리	위 탁 처 리	위 탁 처 리 율	
計	6,894	41,983	25,978	16,005	38.1%	
특 정 폐 기 물 류	小 計	4,789	2,291	582	1,709	74.5%
	특정유해	802	102	9	93	91.1%
	폐유	2,090	388	37	351	90.5%
	폐합성수지	1,107	375	115	260	69.3%
일 반 폐 기 물 류	폐산·폐알카리	790	1,426	421	1,005	70.5%
	小 計	5,006	39,692	25,396	14,296	36.0%
	유기물류	3,024	7,458	2,973	4,485	60.1%
반무기물류	1,982	32,234	22,423	9,811	30.4%	

註 : 1)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와 일반폐기물 배출업소는 다수 중복

• 처리내역(1988)

매립 (32.2%)	재활용 (52.3%)	소각 (3.1%)	기타(보관분) (12.4%)
---------------	----------------	--------------	--------------------

2. 주요시책

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 목적
  - 폐기물의 처리를 체계화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 폐자원의 회수율 제고로 국가 자원낭비를 최대한 억제
- 기본계획의 주요골자
  - 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 폐기물 중간처리 체계의 확립
  - 폐기물 자원화 대책 수립
  - 폐기물 처리비용의 합리화
- 나. 김포매립지 건설사업
- 사업기본 계획

- 위치 :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일원
- 처리대상구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예상사용면적 : 20,750천㎡ (630만평)
- 대상사용기간 : 25년(1991~2015)
- 총투자규모 : 1,374억원
  - 세계적 수준의 고도 위생처리

• 추진체계

- 사업총괄 : 환경청
- 실무집행 : 공동협의체 (조정위원회)

다. 분뇨처리장 건설사업

• 경위

'72년부터 國庫補助事業으로 추진하였으며, '84년도부터 ADB차관사업으로 분뇨처리장이 없는 읍·면 단위에 중점 설치

• 분뇨처리장 설치현황

- 전국 149개 처리장 가동중
  - 도·시 : 65개소(시설용량 : 10,918kl / 일)
  - 읍·면 : 84개소(시설용량 : 1,759kl / 일)

• '89사업

- 읍·면 분뇨처리시설(국고보조 100%)
  - 대상지역 : 7개소(파주, 고양, 음성, 천원, 논산, 장흥, 영일)
  - 시설규모 : 245kl / 일
  - 사업비 : 4,832백만원
- 도시 분뇨처리시설(국고보조 70%)
  - 대상지역 : 1개소(공주)
  - 시설규모 : 30kl / 일
  - 총사업비 : 741백만원

라. 특정유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공처리시설)

•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

- 악성 폐기물처리를 위하여는 고도의 기술과 거액의 시설투자가 요구됨.
- 처리기술의 부족 및 처리비용의 과다로 민간처리업소의 부적정 처리사례 발생

• '89사업

- 사업개요(온산 처리시설)
  - 위치 : 경남 울주군 온산면
  - 시설규모 : 100톤 / 일
  - 소요예산 : 5,083백만원

· 사업기간 : '86~'89.8.26

× 경기화성 처리시설 운영(60톤/일)

마. 농어촌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 영농방식의 전환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농촌폐기물이 도시화됨에 따라 이의 처리대책이 요청되고 있음.
- 사업내용
  - 특별청소지역 지정 확대
    - 면소재지 및 인접부락까지 지정(대상 1,265개소)
    - '89. 12 까지 지정 완료
  - 쓰레기 수거장비 확보
  - 쓰레기 매립시설 확보
    - 장기적으로 대단위 광역매립지 활용
    - 단기적으로 자연부락단위, 면소재지, 군매립지를 확보
  - 영농폐기물 수집 처리(한국자원재생공사)
    - 폐비닐 수집처리 : 70,000톤/년(발생 : 85,000톤/년)
    - 농약공병 수집처리 : 12,000톤/년(발생 : 18,000톤/년)

3. 향후전망

가. 쓰레기 및 분뇨배출량 예상 추이

- 2001년의 쓰레기 배출량은 88대비 1.4배 증가
- 생분뇨의 배출량은 감소되나 정화조 오니량은 3.8배

증가

나. 산업폐기물 배출량 예상 추이

- 산업폐기물의 양적 증가(연 12.7%)와 질적 악성화(유해산업폐기물 연 19.6%)로 환경오염 우려
- '88기준시 향후 10년간 유해산업폐기물 발생량은 6배, 일반산업폐기물 발생량은 3배 증가
- 다. 관리행정의 방향
  - 모든 가정과 기업 등 각종 폐기물 발생원에서 최대한 감량화하도록 홍보제도 강화
  - 일단 발생된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유해폐기물 등으로 분리수거 체계 확립
  - 재생 가능한 폐기물의 회수율 제고를 통한 資源化 촉진 및 그 재생기술의 적극 개발
  -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의 적극 확충으로 폐기물의 감량화 및 그 소각여열의 經濟的 活用
  - 유해산업폐기물의 2차 오염방지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별도시설 마련 공공처리
  - 국토종합이용계획과 연계한 광역적 시야에서의 매립지 확보 및 위생처리 추진

Ⅲ. 環境 保全法 體系와 整備

- 현행 環境保全法을 폐지, 環境政策基本法 등 개별 법화

법안	주요 골자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권의 구체화 ○환경오염인자의 비용부담 책임명명
환경오염 피해심사 및 분쟁조정법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당해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제도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분쟁해결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조정제도의 다양화(알선, 조정, 재결) ○특별대책지역내 배출시설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근거 마련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방안의 구체화
소음·진동방지법	○건설, 교통소음 규제기준 설정 ○생활소음 규제지역내에서 규제기준 초과시 작업시간의 조정 명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 심사 강화
수질환경보전법	○특별대책지역내 배출시설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근거 마련 ○수질오염 심화호소를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의 설치 및 사용제한